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19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이춘석 · 윤준병 · 김의겸
朴芝源 · 임미애 · 서삼석
김성범 · 정준호 · 안호영
양부남 · 박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질문·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거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기

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이 경우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거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u><신설></u>	

④ ~ ⑦ (생략) 제71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1. (생략) 2. ~ 7. (생략)	<u>한다.</u>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71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4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	--